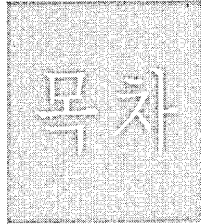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저작권 정책에 관한 연구
-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

황 옥 경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hmirim@swu.ac.kr



1. 서 론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저작권정책개발과정
4. 정책문제 인식
 - 4.1 저작권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 4.2 질문지조사 결과 분석
5. 정책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
6. 정책탐사
 - 6.1 선행연구에서의 정책 요소
 - 6.2 질문지조사 결과 분석
 - 6.3 사례연구 결과 분석
7. 결 론

1. 서론

정책이란 어떤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 목표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한 상당히 중요한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 정책을 정의하면 어떤 개인 또는 단체가 저작권의 소유 및 양도와 더불어 저작물의 배포 및 이용과 관련하여 선택한 일정한 행동과정 혹은 행동방법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세부결정을 정하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학술 정보와 지식의 생성, 배포,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지로서 지적 산물의 보호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위해 이러한 저작권 정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원격교육 시행 및 institutional repository의 구축과 더불어 대학 소속 구성원들의 학위 논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과제보고서, 온라인 강의 자료 등 다양한 지적 산물의 생성 및 수집, 배포, 전송, 이용이 기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저작권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대학 혹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저작권 정책이 개발되어 저작권 관련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정책 개발 현황을 파악하였고, 국외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정책 사례를 저작권 귀속 문제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작권 정책 개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저작권 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행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를 통해 저작권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2. 국내 대학도서관 200개관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질문지조사를 시행하여¹⁾ 국내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정책 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3. 국외 14개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및 대학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정책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중 질문지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

1) 10월 25일까지 질문지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하였다. 서울과 지방 캠퍼스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 도서관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두 200개 대학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중 80건이 회수되어 응답률은 40%에 이르렀다.²⁾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정책 현황과 관련한 4개 문항
- 둘째, 저작권 정책 개발 요구와 관련한 6개 문항

국외 저작권 정책 사례는 모두 14건으로서 이는 인터넷상을 통해 검색한 미국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정책 사례들이다. 이들의 목록은 참고문헌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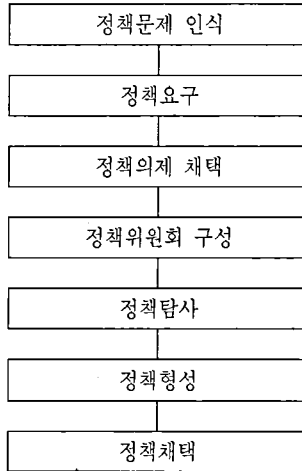
3. 저작권 정책개발 과정

정책과정은 정책 환경 속에서 유발된 문제의식으로부터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그리고 종결에 이르는 일련의 결정과 행동의 과정이다. 정책개발은 문제 해결 또는 미래 실현을 목적으로 정책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책문제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다. 정책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정책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정책결정자에게 요구하는 정책요구의 단계가 있게 된다. 정책요구를 거쳐 정책문제가 실제 정책 활동으로 구체적 논의의 대상으로 표명되면 정책의제가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 비교, 분석, 평가하는 정책탐사를 진행한다. 정책탐사는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여론화와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탐사 이후 다양한 정책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정책형성의 과정을 거친 후 정책채택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정책의 문제 인식과 정책위원회 구성, 정책탐사의 과정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질문지조사, 저작권 정책 사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 및 대학도서관이 저작권 정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2) 10월 25일까지 질문지조사를 계속 진행하여 응답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표 1〉 정책개발 단계



4. 정책문제 인식

4.1 저작권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정책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저작권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저자, 출판사, 사서, 대학, 공중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그리고 비용이나 보상과 같은 측면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학술 자료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Zwolle Principles 2001).

대학에서 저작권 정책이 필요한 이유 및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배포를 촉진함으로써 혁신과 지적 생산성을 촉진

둘째, 학술 정보로의 접근성을 최적화

셋째, 대학과 소속 학술 커뮤니티 구성원 개개인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 증진

넷째,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정책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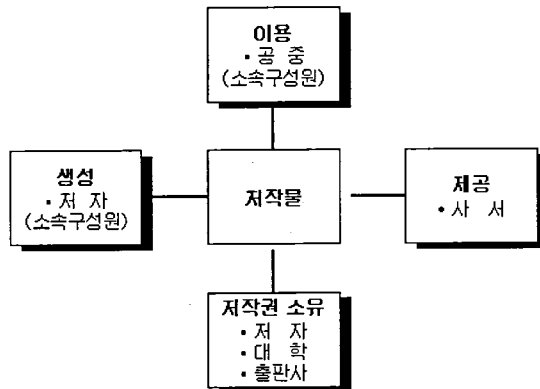
다섯째, 법을 이행하고 해석함에 있어 방향을 제시(Brewelheide 1989)

여섯째, 저작권 정책의 존재 자체가 저작권 수용에 대한 개요 제시(Gasaway 2004)

일곱째,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책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시의 규제에 대한 기반 제공(Gasaway 2004)

여덟째,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지침(Gasaway 2004)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저자, 공중, 사서, 대학, 출판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학의 저작권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대학과 같은 학술 커뮤니티에서는 교수, 연구자, 학생이 학술 자료를 생성하는 저자인 동시에 학술 자료의 이용자, 즉 일반 공중이기도 한 특성을 지닌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저작물을 생성하는 저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산물이 널리 배포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참조함으로써 해당 주제 분야에서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해당 주제 분야의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로서의 공중은 아무런 금전적, 법적 제한 없이 학술 자료에 최대한 용이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대학은 직무저작물(works-for hire 혹은 works made for hire)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또 다른 이해당사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직무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 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 고용되어 있는 교수, 연구자, 직원이 생성한 저작물의 경우 달리 계약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되거나 또는 'academic exception'(Kelly et al. 2002) 원칙에 따라 저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 저작권 정책과 관련한 대학의 관심은 합리적인 가격에 연구 집단이

최대한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가는 것과 저작물의 생성과 배포를 통해 대학의 명성을 높이고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UMA SUTHERSANEN 2003). 따라서 인센티브 문제, 연구 개발의 촉구, 최종 지적 산물에 투자된 부분에 대한 보호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Kelly et al. 2002).

한편 저작권 소유자가 학술 자료의 발행을 위해 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가 저작권 소유권자가 됨으로써 이해당사자 관계에 놓이게 된다. 상업출판사의 경우,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및 판매, 라이선스, 저자에게 로열티 지불,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로비 활동 등이 관심사이다(UMA SUTHERSANEN 2003).

사서는 저작물의 수집, 가공, 조직, 배포를 담당함으로써 저작권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존재하게 된다. 사서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이익에 균형을 맞추는 권리 배분을 통해 최상의 품질의 학술 자료에 최대한의 접근을 지원하고자 하는 저작권 정책의 목적은 결국 사서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한 것이다.

4.2 질문지조사 결과 분석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조사의 결과, 현재 소속 대학이나 대학도서관에 저작권 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곳은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 4개 도서관에 불과하였다.

<표 2> 저작권정책의 유무 현황

	빈도	%
유	4	5.0
무	76	95.0
합계	80	100.0

이러한 조사 결과는 68개 대학교 중 36개(52.9%) 대학교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정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Kelly et al.(2002)의 연구 결과와 크게 대비되는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들 정책의 개발 연도는 1994년이 평균값, 1997년이 중간값, 2000년이 최빈값으로 조사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대부분의 저작권 정책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작권 정책이 명시적으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작권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지침이나 원칙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개 도서관 중 27개(35.5%) 도서관이었다.

〈표 3〉 유사저작권정책의 유무 현황

	빈도	%
유	27	35.5
무	49	64.5
합계	76	100.0

이렇게 저작권 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도서관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지만 저작권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도서관은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71개 도서관으로서 이는 93.4%에 달하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표 4〉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 현황

	빈도	%
필요 하다	71	93.4
필요 없다	5	6.6
합계	76	100.0

저작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와 관련한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한 곳이 모두 27개(35.5%) 도서관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정책이란 것이 문제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행동지침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조하기 위해서, 저작권정책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규제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5%-13%에 이르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5〉 정책개발이 필요한 이유

	빈도	%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활용	27	35.5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	15	21.1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조	15	21.1
저작권정책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규제하는 도구로 활용	13	18.3
기타	1	1.4
합계	71	100.0

한편 저작권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시급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혹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표 6〉 정책개발이 불필요한 이유

	빈도	%
더 시급한 업무가 있기 때문	2	40.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2	40.0
기타	1	20.0
실제 업무에 도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	0	0
합계	5	100.0

5. 정책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저작권 정책은 조직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대변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Nollan 2002 ; Gasaway 2004). 즉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저작권 정책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저자이자 공중이 되는 교수진, 대학을 대변하는 관리자, 사서들이 주된 구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서는 저작권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고 도서관 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관의 업무 방식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능하다면 대학 외부의 법률 자문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해당사자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질문지조사를 통해 저작권 정책 개발 혹은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을 질문한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이 사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71건 중 68건(전체 응답자의 9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 정책 개발의 주체는 사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법률 자문가(78.9%), 교수진(77.5%), 관리자(62%)에 대한 응답비율도 모두 60%가 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모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바람직한 저작권정책개발위원회 구성

	빈도	응답%	사례%
사서	68	30.2	95.8
외부법률자문가	56	24.9	78.9
교수진	55	24.4	77.5
관리자	44	29.6	62.0
기타	2	0.9	2.8
합계	225	100.0	316.9

6. 정책탐사

정책탐사는 정책채택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는 단계이다. 저작권 정책 개발의 경우, 정책에 명시하여야 할 할 쟁점들을 규명하고 각 쟁점별로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를 모색해 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 요소들을 종합하였고 둘째,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현행 저작권 정책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의 쟁점과 가능한 대안들을 개발하였다.

6.1 선행연구에서의 정책 요소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 요소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문헌연구를 통한 저작권 정책 요소 비교

Bruwelheide(1989)	Hoffmann(2003)	Gasaway(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관이 저작권법을 따르고 있음을 명시 • 모든 직원 및 학생들의 법 준수 촉구 • 공정이용의 의미와 요건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복제 및 이용에 대한 지침 • 저작권 처리의 책임과 관리를 맡는 기관 안내 및 행정절차 • 저작권 경고문 표시 • 여러 매체에 대한 공정이용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 - 관련된 법 조항 - 경고문 - do and do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에 대한 개괄 • 공정이용의 요건 •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 • 저작물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관의 정책 • DMCA나 TEACH Act에서 제안 또는 요구하는 정보 • 저작권 경고문의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 준수 명시 •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제한 • 공정이용의 범위 • 관내 복제 • 인증된 문헌전달서비스의 이용 • 도서관 상호이용 • 인쇄 자료의 스캐닝 • 인터넷에 저작물 게시 • 웹에 저작물 게시 •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정보 • 강의 중 이용, 원격교육

이들 연구자가 제시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소속 기관이 저작권법을 따르고 있음을 명시
- 모든 직원 및 학생들에게 저작권법 준수 촉구
- 저작권 처리의 책임과 관리를 맡는 기관 안내
- 저작권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 기술
-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제한, 즉 공정이용의 범위
-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관련한 지침

- 관내 복제
- 문헌전달서비스의 이용
- 도서관상호대차
- 인쇄 자료의 스캐닝
- 인트라넷에 저작물 게시
- 웹에 저작물 게시
-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정보
- 강의 중 이용, 원격교육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관의 정책
- 저작권 경고문의 표시에 관한 부분

이 중 공정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국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 저작권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한정 열거주의적인 법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실제 대다수의 시행 저작권 정책 사례를 보면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질문지조사의 문항에는 상기 종합 요소 외에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한 문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6.2 질문지조사 결과 분석

질문지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저작권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빈도	응답%	사례%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지침	70	20.8	98.6
저작권법 준수를 명시하는 개괄 부분	64	19.0	90.1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56	16.6	78.9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관의 정책	45	13.4	63.4
저작권 처리의 책임과 관리를 맡는 기관 안내	41	12.2	57.7
저작권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서술하는 부분	34	10.1	47.9
저작권 경고문의 표시에 관한 부분	27	8.0	38.0
합계	337	100.0	474.6

상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개 도서관 중 70개(98.6%) 도서관이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지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저작권법 준수를 명시하는 개괄 부분이 68개(90.1%) 도서관,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모두 56개(78.9%) 도서관에 의해 주요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 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관의 정책(63.4%), 저작권 처리의 책임과 관리를 맡는 기관 안내(57.7%), 저작권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서술하는 부분(4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이용허락과 관련한 지침을 세분하여 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이용허락 지침과 관련한 요소

	빈도	응답%	사례%
도서관상호대차	59	14.0	85.5
관내 복제	57	13.5	82.6
문헌전달서비스의 이용	56	13.3	81.2
인쇄자료의 스캐닝	55	13.1	79.7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정보	53	12.6	76.8
웹에 저작물 게시	50	11.9	72.5
강의 중 이용, 원격교육	46	10.9	66.7
인터넷에 저작물 게시	45	10.7	65.2
합계	421	100.0	610.1

상기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상호대차와 관련되는 요소가 59개(85.5%) 도서관의 응답을 얻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요소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요소가 모두 저작권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3 사례 연구 결과 분석

사례 연구는 미국 대학도서관 14군데의 저작권 정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례 연구에서 나타난 저작권 정책은 대부분 지적재산권 정책 내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성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목적 및 목표
- 저작권 문제 관할 부서
- 저작권의 귀속 문제
- 저작권 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절차

- 이익금의 배분
- 이용허락
- 저작권 표시 방법
- 용어 정의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저작권의 귀속 규정만으로 제한하여 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외 저작권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저작권의 귀속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경우로 규정할 수 있다.

- ① 교수가 생성한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이 교수에게 귀속되는 경우
- ② 교수가 생성한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이 대학에 귀속되는 경우
- ③ 직무저작물 생성에 있어 저자인 교수가 대학 자원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소유권이 대학으로 양도되는 경우
- ④ 저작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 ⑤ 직무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자인 교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 대학이 갖는 권리
- ⑥ 직무저작물과 관련하여 대학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저자인 교수가 갖는 권리
- ⑦ 저작권을 대학에서 저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⑧ 저작물 출판을 위한 권리의 양도
- ⑨ 학생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 ⑩ 교수가 아닌 직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기 10가지 경우는 이해당사자인 대학과 저자, 출판사의 저작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자는 교수와 교수가 아닌 직원, 그리고 학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각 경우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대안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 정책 사례는 괄호 안에 명기하였다. 제시된 사례가 특별히 대표성을 갖는다거나 유일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① 교수가 생성한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이 교수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무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대학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학술계에서의 관례에 따라 그리고 저자들의 자유로운 저술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저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대안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교수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일상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제공된 대학 자원을 이용하여 생성된 전통적인 학술 저작

물은 창작자의 소유이다(Michigan University).

- 일반적인 학술 저작물은 대학이 아닌 저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University of Minnesota).
- 전적으로 강의만을 목적으로 생성된 저작물은 저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University of Minnesota).

둘째,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교수가 생성한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수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 대학은 그 저작권의 소유를 포기한다(Yale university).
- 직무저작물(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대학에 주어진다)이거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대학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할당 받은 경우이거나, 대학이 지원을 하는 경우이거나, 대학 자원이나 인원을 상당량 이용하거나, 계약 이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권의 모든 권리는 창작자에게 유보된다(Stanford University).

셋째,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저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됨을 명시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학술적 전통에 따라, 본 정책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스탠포드는 표현의 형태와 상관없이 교수 저작물, 학술 저작물,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Stanford University).

② 교수가 생성한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이 대학에 귀속되는 경우

대학에 저작권이 귀속됨을 명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저작물(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대학에 주어진다)이거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대학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할당 받은 경우이거나 대학이 지원을 하는 경우이거나 대학 자원이나 인원을 상당량 이용하거나 계약 이행을 하는 경우(Stanford University)

둘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저작권이 있으면서 특허도 가능한 경우(Yale University)

③ 직무저작물 생성에 있어 저자인 교수가 대학 자원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소유권이 대학으로 양도되는 경우

상기 내용 중 대학 자원의 이용 정도에 따라 저자인 교수의 저작권이 대학으로 양도되는 경우와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수준의 이용이 아닌 경우로서 말 그대로 모든 교수진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의 이용인 경우(Cornell University)

- 둘째, 박물관 소장물처럼 특별하거나 희귀한 대학의 소장물에 대한 과도한 이용(Harvard University)
- 셋째, 결과물에 학생 혹은 직원들의 목소리 혹은 이미지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이용, 결과물의 준비 과정에 직원이나 학생들의 상당한 독창적인 수준의 공헌이 있는 경우(Harvard University)
- 넷째, 결과물의 배포를 촉진하기 위해, 또는 대학이나 대학 소속 부서의 승인이나 보증을 함축하고 있는 홍보를 위해 대학이나 대학 소속 부서의 이름이나 훈장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Harvard University)
- 다섯째, 대학 교수 이외 고용인의 용역이나 대학 자원을 저작물 창작에 상당량 이용하는 경우로서 상당량의 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한 문제는 관계 학장 혹은 연구소장에게 문의 (Stanford University)

상당한 이용이 아닌 경우 즉 일반적인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서관, 자신의 연구실, 데스크탑 컴퓨터, 대학의 컴퓨터 네트워크, 조교, 사무집기의 이용(Columbia University), 데스크탑 컴퓨터, 대학도서관, 그리고 제한적인 보조적 혹은 행정적 자원의 이용(Stanford University) 등이다.

④ 저작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공동 소유권과 관련한 저작권 정책은 해당 저작물이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개인의 노력으로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명시하는 정책이다. 관련 예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이나 대학 재단이 자금 지원을 한 자원을 이용한 경우
- 둘째, 교수가 아닌 대학의 고용인의 이용에 의한 경우
- 셋째, 원격 교육 서비스와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의 이용에 의한 경우
- 넷째, 연구실, 사무실, 스튜디오 혹은 도서관이 아닌 시설의 이용에 의한 경우(이상은 Georgia Southern University)
- 다섯째, 교수진과 대학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Saint Cloud State University)
- 여섯째, 저자의 저작물 기획, 준비, 생성, 배포에 대학이 관리하는 자원이 기여를 한 경우 대학과 저자간의 협상에 의해 경우(Simon Fraser University)

⑤ 직무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자인 교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 대학이 갖는 권리

이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 첫째, 대학이 사용료 면제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에 한해 사용료 면제 라이선스 보유(Columbia University)
- 달리 서면 계약이 없는 한, 교재를 제외한 대학 내 저작물의 사용료 면제 이용(University of Kansas)
- 외부로의 배포는 불가하나 대학 내에서의 교수, 연구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이용인 경우 대학은 사용료 면제 이용권을 보유(University of Kansas)
- 대학에게 내부적으로 행해지는 영구적인, 로열티가 없는, 배타적인 기반에서의 교수, 연구 및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에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권리 보유(University of Illinois)

둘째, 사용료 면제 라이선스 외에 다른 권리까지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공동저작권인 경우 대학은 산출물에서 파생된 사용료 혹은 기타 수입에 따른 이익에 대한 권리, 저자와의 합의를 통해 산출물의 배포 및(혹은) 출판을 위한 계약 체결의 권리, 산출물에 대학명을 명시할 권리, 저자에게 아무런 배상 없이 대학의 설비를 통해 산출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생산하거나 복제하고 이용하는 권리, 제3자에게 이익을 양도하는 권리 보유(Simon Fraser University)

⑥ 직무저작물과 관련하여 대학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저자인 교수가 갖는 권리

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비상업적인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요구(Columbia University)
-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이 생성한 저작물을 계속 이용(Cornell University)

둘째, 저작권의 재양도 요구 가능(Stanford University)

셋째, 지적재산을 생성한 이는 그 상업적 이용, 공공 이용, 개발, 수정과 관련한 결정에 자문(Harvard University)

넷째, 저자로서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권리(Indiana University)

다섯째,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적재산과 관련한 연구를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방법을 이용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보를 배포하고, 개발(Indiana University)

여섯째, 공동저작권인 경우 저자는 산출물에서 파생된 사용료 혹은 기타 수입에 따른 이익에 대한 권리,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산출물의 배포 및(혹은) 출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 산출물에 저자명을 명시할 권리 보유(Simon Fraser University)

⑦ 저작권을 대학에서 저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작권을 대학에서 저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 대학의 법적 의무나 대학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2) 자료에 대한 대학의 적절한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3) 창작자의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이익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4) 대학의 목표나 원칙과 달리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허락(Stanford University)

둘째,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저자가 저작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대학의 비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 라이선스를 허락해 주는 조건 하에 고려(Columbia University)

⑧ 저작물 출판을 위한 권리의 양도

저작물 출판을 위한 권리의 양도와 관련한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저작물로서 저자가 저작권을 지니고 있는 책이나 논문기사를 출판하는 경우, 저자는 대학 내 교수, 연구 및 기타 비상업적인 대학 목적을 위해 출판 저작물의 합리적인 일부분을 대학이 사용료의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Columbia University).

둘째, 저작물의 출판 및 배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은 공중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계약을 맺도록 요구되는 바이다(Harvard University).

셋째, 대학이 출판이나 외부 배포에 있어 짧은 기간의 연기를 요청하고 그러한 연기가 대학으로 하여금 저자에 의해 발표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저자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University of Minnesota).

⑨ 학생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학생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대학의 고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저작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학생과 박사후 과정 연구원은 대부분의 경우 대학의 고용원이 아닌 관계로 저작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학이 이들 작품의 저작권 소유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Yale University).

둘째,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교육 과정 중에 생성한 저작물은 대학이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학술적 전통에 따라,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학생이 교육 과정 중에 생성한 논문, 보고서, 논문기사와 같은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Stanford University).

- 학위를 받기 위해 학생이 생성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달리 서면상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학생에게 유보된다. 학위논문을 제출함으로써 학생은 자동적으로 대학에 비배타적인, 전세계적인, 사용료 면제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다섯째, 수업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생성된 지적재산권은 대학이 아닌 저자에게 유보된다(University of Minnesota).
- 셋째, 그 외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다음의 예는 모두 Cornell University의 정책 사례이다.
- 대학 혹은 대학의 고용인과의 고용 관계에서 생성된 저작물이 아니며 대학자원을 상당량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은 학생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 대학이 일방 계약당사자인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를 위해 일한 학생인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다.
 - 저작물의 생성에 기여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학생인 경우 기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학생의 기여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저작물을 생성하게 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대학 고용인과 협동작업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대학 고용인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 상기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대학이 보상을 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학생은 대학의 비고용인을 위한 조항을 따르게 된다.
 - 학생은 대학의 저작권정책과 일치하는 소속 대학, 대학원의 규칙과 제한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학위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지닌 학생은 대학의 정책에 따라 이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대학에 허용해 주어야 한다.

⑩ 교수가 아닌 직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 경우, 직무저작물, 즉 고용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대학에 귀속시키고 있다.

7. 결 론

저작권정책은 각 조직의 목적과 목표, 비전,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구 등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 고유의 저작권 정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권정책 개발에 필요한 공통의 개발 과정과 정책 모형이 정책 개발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정책 모형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조사 결과, 저작권 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국내 대학 혹은 대학도서관은 전체의 5%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작권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93%의 도서관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저작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위원회를 결성할 때에는 사서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수진, 외부 법률전문가, 그리고 대학 관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저작권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과 관련한 질문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허락 관련 지침, 저작권법 준수를 명시하는 개괄 부분,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관의 정책, 저작권 처리의 책임과 관리를 맡는 기관 안내, 저작권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서술하는 부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넷째, 저작권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중 특히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저작권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 대학도서관 저작권정책 14건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진, 직원, 학생들이 저자인 각각의 경우를 대상으로 저작권의 소유, 양도, 권리와 관련한 10가지 경우를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저작권 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기본 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사례와 더불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저작권 정책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 처리를 위한 행정 부서, 저작권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와 관련한 저작권 정책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유수현. 2004.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23-345.
- 이기식. 2002. 디지털시대 지식재산권정책의 제도적 측면분석 - 미국의 경험의 바탕으로. 『지방정부연구』, 6(1): 257-275.
- Bruwelheide, Janis H. 1989. "Do You Have a Copyright Policy?" *School Library Journal*, 35(7): 129.

- Gasaway, Laura, 2004. "Drafting an Organizational Copyright Policy." *Information Outlook*, [cited 2006.9.2].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m0FWE/is_9_8/ai_n7072119>
- Harrey, Judith, 2003. "What does ZWOLLE stand for?" *Learned Publishing*, 16(4): 290-292.
- Hoffmann, Gretchen McCord, 2003. "What Every Librarian Should Know about Copyright, Part IV: Writing a Copyright Policy." *Texas Library Journal*, 79(1): 12-1.
- Kelly et al. "Ownership and Digital Course Materials: A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at Two-and Four-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Libraries and the Academy*, 2(2): 255-266.
- Nollan, Richard, 2004. "Campus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development." *Reference Service Review*, 32(1) : 31-34.
- UMA SUTHERSANEN, 2003. "Copyright and Educational Policies: A Stakeholder Analysi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23(4): 585-609.

<사례 연구 대상 저작권 정책>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Georgia Southern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Saint Cloud State University
Simon Fraser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Kansas
University of Minnesota
Yale university